



답 변

-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제3조의2제4항에서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(FM)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,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국민들이 지하 대피 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하층에 FM라디오 및 DMB중계기용 무선기기의 설치를 규정한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은 특정 기술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아 소방용 누설동축케이블과의 겸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
- 소방용 누설동축케이블과 겸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난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건축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
- 또한 겸용사용으로 인해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대해 지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판단하여야 함

질의 3 무선통신보조설비 겸용사용 관련(2)



- FM/DMB와 무통설비 중계기용 무선기기(누설동축케이블 또는 안테나)가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[별표 2] 15에 준용할 경우 설치 기준에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?
-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유선 수신 장치 및 유선 전송 장치이므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제17조에서 75Ω으로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FM 및 DMB 신호를 지하 음영 지역에 무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소방 무선통신 보조설비 분배기 및 기타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, 이러한 기기들은 임피던스가 50Ω이기 때문에 방송공동수신설비와 소방 무선통신

보조설비를 혼합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?

답 변

- 국민들의 지하 대피 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및 DMB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규정한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은 특정 기술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 소방용 누설동축케이블과 겸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아님
- 다만, 「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」(NFSC 505) 제5조에 따라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은 지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판단할 것이며,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난방송 수신에 지장이 없는 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건축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
- 임피던스는 두 가지 값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별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

질의 4 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설치범위



- (질의1)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지하공간(지하층)의 의미가 건축법상 지하공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수신에 장애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지?
- (질의2) 공동주택(단독형주택)의 건축개요 상, 대지 레벨차에 따른 지하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FM과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중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?
- (질의3) 건축물 지하층이 있으나, 물탱크, 기계실 등으로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에도 설치하여야 하는지?